

‘19년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정 안내

(행정예고 中 : ‘19. 5. 13 ~ 7.12)

2019년 6월 5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



목 차

1. 대상기자재 재배열

2. 일부 대상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 재분류

3. 기타 제도 개선 사항

-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대상 확대
-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완화 및 대상기자재 명확화

대상기자재 재배열

🔗 대상기자재 재배열 [적합성평가 기준에 따라]

현행

- ▶ 적합인증 (별표 1)
- ▶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(별표 2)
- ▶ 자기시험 적합등록 (별표 3)



개선

- ▶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(별표1)로 통합, 기술기준별로 재배열 및 규제수준 표시
 - * 무선 기술기준 [6종]
 - * 유선 기술기준 [4종]
 - * 전자파적합성 기준 [1종]

❖ 기대 효과

- 업체 및 일반 국민이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대상 구분, 유형(적합인증, 적합등록), 기술기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해 짐

일부 대상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 재분류

○ 일부 대상기자재 유형 재분류

현행

- ▶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 164종
 - * 무선기자재 : 121종
 - * 유선기자재 : 43종



개선

- ▶ 적합인증기자재 중에서 41종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
 - * 무선기자재 : 23종 완화
 - * 유선기자재 : 18종 완화

❖ 기대 효과

- 인증비용 : 건당 110,000원 절감 (165,000원 ⇒ 55,000원)
- 인증처리기간 : 4일 감소 (5일 ⇒ 1일)
- 서류 간소화 : 회로도 등 6개 서류 제출 ⇒ 부합확인서 등 2개 서류로 간소화

기타 제도 개선 사항

○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 간소화 대상 확대

< 현행 >



무선모듈 인증



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한 완제품

- 무선모듈 인증 당시 시험 생략
- 무선모듈 인증 당시 관련 서류 생략

< 확대 >



완구용 모터 인증



인증 받은 완구용 모터를 사용한 완구
(별도의 능동회로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)

- ‘완구용 모터’, ‘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’ 인증 당시 시험 생략
- 구성품 인증 당시 관련 서류 생략



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
전용모듈 인증



인증 받은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복합기

○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완화 및 대상기자재 명확화

적합성평가 표시방법 완화

현행

- ▶ 수입제품은 세관 통관 전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
(단, 병행수입제품은 예외)



개선

- ▶ 모든 수입제품이 세관 통관 전 제품 표면에 부착할 적합성평가 표시 스티커 등을 제공할 경우에 통관 가능

대상기자재 명확화

-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분리하여 추가
-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
 - ▶ 각 대상기자재의 정격입력 등으로 인한 지정시험기관 및 자기시험 등록 구분을 명확화
-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·비디오 관련 기기류, 정보·사무 기기류를 **멀티미디어 기기류로 통합**
- 과학용 기자재의 명확화
 - ▶ 전기기기·전동기기, 조명기기, 멀티미디어 기기 중 USB 또는 건전지(충전지 포함)으로 동작하는 것으로,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**과학실습용**으로 사용되는 **조립용품 세트(키트)** 대상 **제외**

감사합니다

Q&A

❖ 위의 내용은 『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고시』 개정안 중 주요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전체적 내용, 구체적인 사항 등은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